

전주지방법원 2024. 7. 26 선고 2023가단3577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피 고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천년

담당변호사 김창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황희상, 신동휘

변 론 종 결 2024. 5. 31.

판 결 선 고 2024. 7. 26.

주 문

1.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기재 각 부동산 중 13/110 지분에 관하여 2023. 5. 23.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을 취소한다.
2. 피고는 D에게 별지 기재 각 부동산 중 13/110 지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2023. 5. 24. 접수 제4280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3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1.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기재 각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2023. 5. 23.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을 취소한다.

2. 피고는 D에게 별지 기재 각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2023. 5. 24. 접수 제4280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청구취지의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일은 2023. 8. 31.자 사실조회 회신 자료와 피고의 주장에 따라 오기로 인정하여 위 일자로 정정하였다.

이 유

1. 피보전채권 등

가. 주식회사 E는 D를 상대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2014. 1. 14. 313,237,744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등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갑 제5호증).

나. 원고는 2020. 10. 28. 주식회사 E로부터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양수하고, 2020. 12. 7. 위 회사를 대리하여 D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갑 제3, 4호증).

다.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22. 12. 30. 사망하였고, 당시 상속재산으로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외에 별다른 재산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갑 제1호증, 2023. 8. 31. 및 2024. 3. 7. 사실조회 회신).

라.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와 자녀 D, G, H, I가 있었다(2023. 8. 31. 사실조회 회신).

마. 망인의 상속인들은 2023. 5. 23.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이하 ‘이 사건 협의’라 한다)을 하였고, 피고는 이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갑 제1호증).

2. 사해행위 여부 등

가. 판단 기준

이 사건 협의일인 2023. 5. 23. 당시 D의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가 부족한 상태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나, D가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였는지 여부는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나. 구체적 상속분

망인의 상속재산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2024. 3. 7. 사실조회 회신), 공동상속인들의 특별수익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공동상속인 중에 상속재산 유지 등에 기여한 자가 있을 때 그 기여분을 재산가액에서 공제해야 하는바, 피고의 기여분에 관하여 살펴본다.

망인과 피고는 1969. 5. 22. 혼인하여(당시 망인 35세, 피고는 30세) 자녀 4명을 낳아 기르고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53년간 혼인 생활을 유지하였다. 망인과 피고의 혼인기간 등이 위와 같다면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혼인기간 중 망인과 피고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일구어낸 것으로서 그 형성유지에 동등한 기여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망인과 피고가 혼인기간 중 취득한 재산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과 전북 완주군 J 토지(을 제3호증의 1, 피고 명의)가 있는바, 위 각 부동산의 대략적인 가액을 추정하여 계산하면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기여분은 35%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망인의 간주상속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 중 $13/20$ 지분($1-0.35$)이 된다. D의 법정상속분은 $2/11$ 이므로, 결국 D의 구체적 상속분은 이 사건 부동산 중 $13/110$ ($13/20 \times 2/11$) 지분이 된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D가 이 사건 협의를 하면서 위 구체적 상속분을 포기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D는 자신의 재산상태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그녀의 사해의사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13/110$ 지분에 관한 이 사건 협의는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D에게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의 D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나, 기산점 등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는 이 사건 협의가 사해행위인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부모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생존하는 모에게 단독상속하게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협의가 사회상규에 부합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를 구체적 상속분을 정하는 데 반영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판사 허윤범

별지